

憲 法 改 正 案
投 票 方 法 說 明 文

議 事 局

憲法改正案投票方法説明文

投票方法에 관하여 説明을 드리겠습니다.

周知하고 계신바와 같이 憲法改正案에 대한 表決은 國會法 第105條第4項에 따라 記名投票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憲法改正案投票用紙는 뒷면이 “記名欄”과 “可否欄”으로 區分되어 있습니다.

議員께서 記票를 하실 때에는 먼저 投票用紙의 右側 “記名欄”에 議員의 姓名을 한글이나 漢字로 正確하게 記載해 주시고, 左側 “可否欄”에는 憲法改正案에 賛成하시는 議員께서는 한글이나 漢字로 “可”라고 記載하시고, 反對하시는 議員께서는 “否”라고 記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無效로 處理되는 경우는

- (1) 議員의 姓名을 識別할 수 없거나 完연히 記名欄 밖에 姓名을 記載한 경우나 記名欄과 可否欄을 바꾸어 記載한 경우
- (2) 한장의 用紙에 議員 2人이상의 姓名을 동시에 記載하였거나 姓名대신 號 또는 文字, 物形을 記載한 경우

(3) 可·否의 意思表示가 分明하지 않게 記載되거나 完全히 可否欄밖에 記載된 경우

(4) 議員의 姓名이 記載되지 않고 可·否 表示만 된 경우

(5) 議員의 姓名 또는 可·否 表記를 訂正하였거나 불필요한 記號·文字등을 表示한 경우

(6) 記名欄과 可否欄에 아무 表示가 없는 白紙의 경우이며,

棄權으로 處理되는 경우는

(1) 投票用紙에 記名欄만 記載되고 可否欄에 아무 表示가 없는 경우임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票하시는 도중에 姓名 또는 可否를 잘못 記載하셨거나 記載內容을 訂正하시고자 할 때는 既히 交付받은 投票用紙를 返納하시고 새 投票用紙를 다시 交付받아 投票해 주시기 바랍니다.

※ 別添 : 憲法改正案 記名投票用紙(樣式)

※ 憲法改正案投票用紙（様式）

○ 前 面

<p>憲 法 改 正 案</p> <p>投 票 用 紙</p>

○ 後 面

可 否 欄	記 名 欄
<p>可</p> <p>(カ)</p>	<p>洪 吉 童</p>